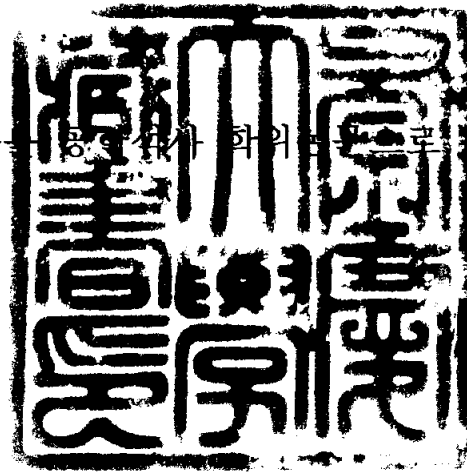


공학석사 학위논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방향 연구

지도교수 김 창 수

이 논문은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산정보학과

김 찬 용

이 논문을 김찬용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4년 월 일

주 심 공학박사 박 지 환



위 원 이학박사 이 경 현



위 원 공학박사 김 창 수



목 차

표 목차	i
그림 목차	ii
ABSTRACT	iii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4
1. 이론적 배경	4
2. 선행연구	7
III. 디지털 도서관 관련 개정 저작권법 분석	10
1. 주요 개정 내용	10
2. 도서관에서의 이용 형태별 법 적용	12
3. 도서관 보상금 제도	14
IV.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방향	17
1.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현재	17
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원문 서비스	19
3. 디지털 도서관 구축 표준 모델 설계	21
4.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제안	25
V. 분석 및 평가	30
1. 분석 및 평가	30
2. 향후 연구 과제	31
VI. 결론	33
[참고문헌]	35

표 목 차

[표 1] 도서관 관련 주요 개정내용 비교	11
[표 2] 아날로그 형태 복제의 법 적용 기준	12
[표 3] 디지털 형태 복제의 법 적용 기준	13
[표 4] 전송의 법 적용 기준	13
[표 5] 출력의 법 적용 기준	14
[표 6] 도서관 보상금 기준	15
[표 7] 원문 디지털화	17
[표 8] 저작권 확보 방법	18
[표 9] 자료 구분별 서비스 기준	21
[표10] 970 Tag (원문사항) 규칙	22
[표11] 원문 서비스 관련 Tag 적용 예시 1	23
[표12] 원문 서비스 관련 Tag 적용 예시 2	24
[표13] 저작권 처리 제안 모델 내용	31

그림 목 차

<그림 1> 디지털 자료 서비스 흐름도	19
<그림 2> 디지털 원문 서비스 모델	25
<그림 3> 원문 원격지 전송 허용 모델	27
<그림 4> 원문 구축 역할 분담을 통한 서비스 계통도	28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ccording to Alternation of the Copyright Act

Chan-Yong Kim

*Department of Computer and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new trend in literary work like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by the high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network technology in the age of digital require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which have the different concept and structure with the copyright law under the age of analog.

Accordingly, copyright law is revised for copyright's protection in digital environment and fair use of digital libra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assigned to suggest the plan to build digital library and activate digital library service through the study of the copyright law for analog library and copyright law for digital library.

First of all,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search concerned to library, the revised copyright law, application of copyright law to library by digital copyright usage-wise and the newly established compens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urrent progress of digitizing analog materials for digital library, service plan to supply original work by digital without violation of the revised copyright law, technical plan to protect the copyright will be

discussed to search any problem and suggest the solution.

Considering the previous review and analysis, it is more reasonable to allow transmission of digital data, build database of non-commercial book in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in order for the digital library to expand the scope of database and supply more various database service to user efficiently.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library status in Korea which is so much inferior to them in other well-developed country the revised copyright law must provide the most extended scope of legal digital service to digital library to promote the legal digital service to user.

I. 서 론

개인 대 개인(P2P) 파일전송 방식으로 파일 제공 서비스를 하는 ‘소리바다’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최근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은 네티즌 50여명을 고소하였고, 대학가 주변의 복사점에 대한 국내·외 서적의 불법 복제에 관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진촬영에 따른 원판 필름 제공여부를 두고 법정다툼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복사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의 전 과정을 급격히 변모시켰고, 정보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시켰다. 디지털 저작물은 복제의 편리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과 유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대량의 복제와 실시간 배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정보생산자는 저작권의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반면, 정보소비자들은 정보 이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저작권법을 재정하고, 시대흐름에 따라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57년 최초로 제정되어, 2000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나 디지털복제의 일부 도서관 제한적 허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의 논란이 있어[1], 이를 개선코자 2003년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첫째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 도서관 면책 규정을 국제적 규범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 관리 정보에 관한 규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EU 회원국 등 일부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신설 규정을 저작권법에 편입하였고, 셋째, 학설상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과 재판 실무상 활용도가 낮은 조항 등을 개정하거나 대체하는 규정을 부가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기존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원활히 수행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복제와 그와 관련된 공정사용의 법리적용, 디지털 저작물의 제작, 전송 및 이용에 대한 저작권법의 이해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기본이론과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저작권 처리를 위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변경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복제, 전송, 출력 등 각 부분에서의 허용범위와 신설된 도서관 보상금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

진행을 살펴보고, 개정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서비스 방향과 향후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표준 모델을 설계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효율적인 원문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가.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저작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독점권을 부여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적 생산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통해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이란 ①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②창작성, ③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두가지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로서, ①공표권, ②성명표시권, ③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①복제권, ②공연권, ③방송권, ④전송권, ⑤전시권, ⑥배포권, ⑦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위의 7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저작재산권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제한을 받는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되,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단체명의로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이 허락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과 질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디지털 도서관

90년도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매체의 수집과 축적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디지털도서관은 기존의 종이매체 중심의 도서관에 디지털 매체가 결합된 형태의 포괄적인 의미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정

의는 전문가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에서 보면 대량의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저장과 검색이 가능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란 종이 및 다른 매체에 기반을 둔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목록화하여 찾고 유통시키는 기능을 하던 전통적인 도서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에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위해서, 디지털 컴퓨터와 저장과 통신장치를 위한 구성물 일체, 그리고 정보와 정보를 재산출하고, 보여주며, 구성하는 S/W의 조합체이다. 디지털도서관의 전체 서비스는 모든 전통적인 도서관의 서비스를 완수해야 하며, 디지털 저장과 검색과 통신의 잘 알려진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도서관은 분산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질적인 정보 저장소의 정보들을 이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탐색,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으로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 조직, 축적, 탐색하여 원격지로 배포하고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료는 인쇄매체 자료와 달리 텍스트 화일, 음성 화일, 화상 화일 등 다중매체로 구성되어 있어 반영구적으로 보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물리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요소가 없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다양한 이용자에게 대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변질, 파괴, 수정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2. 선행 연구

가.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은 제6절에서 여러 형태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8조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라 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일정 범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그의 허락 없이도 복제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도서관 특권”(library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인정할 경우 학문, 예술, 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공익 창출의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

도서관은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전달과 생활의 향상, 문화적 발달에 기여해 왔기에 저작권법 초기부터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을 인정해 온 것이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에 정착되었던 저작권과 공정이용 사이의 균형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3].

이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허용되는 디지털복제의 경우 심각하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저작권자와 관련단체의 지적을 전폭 수용하여,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관내·외 전송, 디지털 자료의 출력 등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환경을 맞아 도서관은 더 이상 아날로그 자료에 한정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독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4].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허용 범위는 최소한 아날로그 환경에서 이용자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자의 재산상의 독점권을 일정한 조건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하여 정보의 원활한 이용 및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공정이용의 도입 취지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저작권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원문을 디지털화 하는데 있어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 처리를 위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대출권 도입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활성화를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공대출(public lending)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용을 위한 제공”을 의미한다[5]. 따라서, 공공대출권이란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도서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이용함으로써 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이 줄어들어 저작권만으로는 저작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공대권법을 시행하고 있다[6].

둘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란 현행 저작권 체계 하에서 도서관이 대량의 디지털화 대상 자료에 대해 수많은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그 허락을 얻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신속히 해결하고, 집중관리센터는 저작물의 대량적 이용처인 도서관 등의 이용허락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아 저작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자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얻는다[7].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학술정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발표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8].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의 운영모델은 ①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②저작권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저작물 집중관리 및 강제이용허락제도 도입이 있을 수 있다[9].

기존 연구는 주로 도서관 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처리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의 경우 저작권료의 징수는 물론, 수많은 저작자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디지털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발전이 함께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III. 디지털 도서관 관련

개정 저작권법 분석

1. 주요개정내용

2000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한 저작권법과 동법 시행령은 [표 1]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디지털복제와 전송을 일부 도서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도서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10, 11]. 이에 2003년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 있던 디지털 복제 허용대상 기관에 대한 단서조항을 없애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도서관에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디지털 복제로 인한 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제1호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3호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만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도 제2항에서 컴퓨터 등을 통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 이용자 수를 실질적인 보유 수량으로 한정하였다.

[표 1] 도서관 관련 주요 개정내용 비교

내용		개정 전(2000.7.1 시행)	개정 후(2003.7.1 시행)
디지털 복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허용 대상	- 국립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도서관으로 제한	-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도서관에 허용)
	허용 범위	- 허용 범위 제한규정 없음	- 자료의 자체 보존 및 관내, 관간 열람목적 전송을 위한 경우만 허용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불허)
열람 목적	관내 전송	- 동시 열람자수 : 무제한 허용 - 저작권 제한(무료)	- 동시 열람자수 : 소장부수 또는 이용 허락받은 수로 제한 - 저작권 제한(무료)
	관간 전송	- 대상자료 제한 없음. - 저작권 제한(무료)	- 비판매용 도서 전체, 판매용 도서 중 발행 후 5년 경과 도서 - 저작권 제한(도서관 보상금 적용 대상)
디지털 자료의 출력		- 불허(화면현시만 허용)	- 저작권 제한(도서관 보상금 적용 대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대상	- 관련 규정 없음	- 자체 디지털화 자료에 대한 출력 - 열람 목적의 관간 전송
	예외	- 관련 규정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판매용 도서의 경우
기술적 조치		- 복제방지장치 설치 (화면현시만 허용) - 암호화 조치 - 변경 확인 조치 - 판매용 전자기록매체 이용방지	- 복제방지장치 설치 - 암호화 조치 - 변경 확인 조치 - 판매용 전자기록매체 이용방지 - 도서관 보상금 산정 장치 설치 의무화

열람을 목적으로 타 도서관에 전송할 경우에 대해 제3항에서는 복제 전송할 수 있는 도서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에 대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제한하였다.

개정 전에는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서 화면현시를 통한 복제만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구축과 서비스에 많은 제약

이 따랐으나[12],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의 방법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복제를 통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도서관에서의 이용 형태별 법 적용

도서관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형태는 크게 복제, 전송, 출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 형태들에 대한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법률적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복제

복제는 디지털 형태와 아날로그 형태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원문 디지털화와 같이 파일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는 복사기기를 통한 종이 형태의 복사로 볼 수 있다. [표 2]와 [표 3]에서 각각의 이용 형태별 법 적용 내용을 보여준다.

[표 2] 아날로그 형태 복제의 법 적용 기준

이용형태	법 적용	비고
조사연구 목적 (이용자 요청)	저작권 제한(무상)	1인 1부, 일부 한정
자체 보존	저작권 제한(무상)	
다른 도서관 요청 (절판 등의 사유)	저작권 제한(무상)	

[표 3] 디지털 형태 복제의 법 적용 기준

이용형태	법 적용	비고
조사연구 목적 (이용자 요청)	이용허락 대상	
자체 보존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형태로 판매중이면 이를 이용
다른 도서관 요청 (절판 등의 사유)	이용허락 대상	
열람목적 관내 전송용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형태로 판매중이면 이를 이용
열람목적 관간 전송용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형태로 판매중이면 이를 이용

나. 전송

전송은 대한 저작권법 적용은 디지털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아날로그 형태의 우편배달, Fax 전송 등을 통한 전송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해 제공할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 전송의 형태에 따른 법 적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전송의 법 적용 기준

구분	이용형태	법 적용	비고
관내	동시열람자수 제한범위 내	저작권 제한(무상)	
	동시열람자수 제한범위 외	이용허락 대상	
관간	판매용 발행후 5년 미경과	이용허락 대상	
	판매용 발행후 5년 경과	도서관 보상금 지급	
	비판매용	도서관 보상금 지급	
관외	외부로의 전송	이용허락 대상	

다. 출력

출력은 디지털 형태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전송 받은 자료, 구입 자료 등을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출력과 관련된 이용 자료에 따른 법 적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출력의 법적용 기준

이용 자료	법 적용	비고
- 자체 DB - 전송 받은 자료	저작권 제한 (도서관 보상금 지급)	
구입자료(CD, 웹DB 등)	구입 조건에 따름	

3. 도서관 보상금 제도

디지털 시대의 전자도서관 구축과 저작자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대치되는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서관 보상금 제도라는 것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 형태에 대하여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와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도서관 보상금 관련 문화관광부 고시는 [표 6]과 같다.

하지만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상금 처리시스템의 도입, 구축 및 이용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은 이용자의 불만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13], 더 나아가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위축시켜 학술, 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6]도서관 보상금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2003-9호)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가)출력 : 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1면 : 이용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을 1쪽을 말한다. 라)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마치 도서관 직원의 수고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잘못 비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명칭을 ‘지적재산권 보상금’, ‘저작권 보상금’, ‘저작권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용자의 혼선을 막고, 도입취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IV.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방향

1.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현재

각 도서관에서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전자저널, 웹DB 구입을 통한 서비스와 더불어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자관 발간 자료에 대한 원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위논문과 함께 이용 빈도가 높은 국내 학회지의 경우 학회와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업체에서 원문 디지털화를 실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서비스 형태도 초기의 CD-ROM 형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 전 디지털화가 허용되었던 국립 도서관에서의 원문 디지털화 여부는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특수목적 도서관은 모두 원문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도서관에서도 대부분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었다.

[표 7] 원문 디지털화

구 분 \ 도서관 유형	특수목적 도서관	일반대학 도서관	교육대학 도서관	산업대학 도서관	계(%)
디지털화하고 있다	6(12.0)	23(46.0)	10(20.0)	3(6.0)	42(84.0)
디지털화 하고 있지 않다	0(0.0)	1(2.0)	1(2.0)	6(12.0)	8(16.0)
계	6(12.0)	24(48.0)	11(22.0)	9(18.0)	50(100.0)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저작권 확보 방법은 [표 8]과 같다. 진행 방향을 보면 공정사용 범위에서의 원문 디지털화보다는 저작권의 무상양도를 통한 저작권 확보와 원문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14, 15].

원문 디지털화 방식은 텍스트방식, TIFF, XML, GIF, HTML, PDF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PDF를 이용한 원문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립도서관 중 42개 도서관의 디지털화 기술을 분석한 결과, PDF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36개(81.8%)로 가장 많았고, XML, HTML, 기타(TIF, PHP)는 각각 2개 도서관(4.5%)에 불과해 대부분의 도서관이 PDF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지금까지의 원문 디지털화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허락서 확보를 통한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즉,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와 상관없이 저작권 자체를 확보해 서비스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PDF를 많이 사용한 것은 원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쉽게 뷰어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운영되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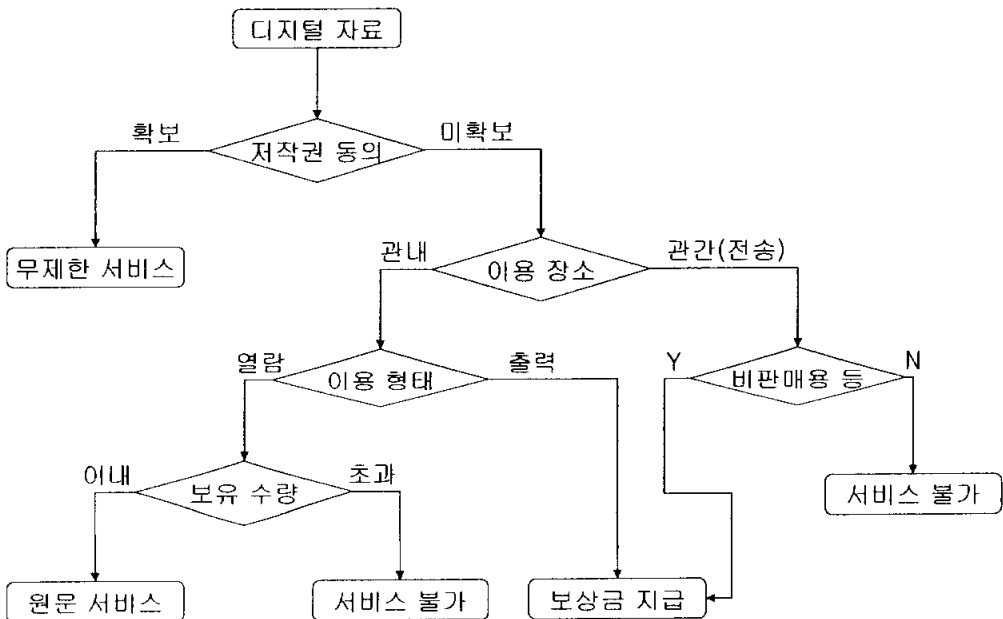
[표 8] 저작권 확보 방법

구분	빈도 (%)
도서관에 허용된 디지털복제 전송권에 의해 확보	14 (33.3)
저작권 무상양도를 통한 확보	27 (64.3)
저작권 유상계약을 통한 확보	1 (2.4)
계	42 (100.0)

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원문 서비스

개정 저작권법은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도서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서비스가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현행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각 도서관에서 원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 자료 중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저작권법 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디지털 자료 서비스 흐름도

이때 유의할 점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 또는 권리자의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이용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문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자체 열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아날로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의 동시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원문 자료에 대한 동시 열람자수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판매용이거나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에 대한 타 도서관으로의 원문 전송과 모든 자체 구축 원문에 대한 출력은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상이 되므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미지서버와의 통신을 고려한 통일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카드 리더기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서관에서의 원문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과 서비스 형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아날로그 환경보다 불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연구에 필요한 학위논문 중 저작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아날로그 형태로 이용하면 도서관을 찾아가 해당부분을 복사하고 복사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디지털 형태

로 이용할 경우는 도서관을 찾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출력비용 외에 1면 당 3원의 도서관 보상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3. 디지털 도서관 구축 표준 모델 설계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서비스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나 비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모델의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저작권 확보 여부, 판매용 도서 여부, 발행 후 5년 경과 여부가 우선적으로 선별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MARC 규칙에 원문정보 관련 Tag를 신규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때 서비스 범위, 보상금 처리 여부, 관내 열람 수량 산정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표 9] 자료 구분별 서비스 기준

자료 구분 \ 서비스 형태		관내열람	출력	관간 전송
저작권 확보 자료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저작권 미확보 자료	발행 5년 이내 판매용 도서	보유수량	보상금	불가
	비판매용 도서 또는 발행 5년 경과 판매용 도서	보유수량	보상금	보상금

원문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표 10]과 같이 970 Tag를 신규로 만들었다. 제1지시기호는 저작권 확보 여부를 구분하는 부분으로 값이 0이면 저작권 확보, 값이 1이면 저작권 미확보를 나타낸다. 제2지시기호는 판매용과 비판매용 자료를 구분하는데, 값이 0이면 비판매용, 값이 1이면 판매용 자료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식별자 ▼a는 동일하게 [디지털 원문]이라고 표기하도록 규칙을 정하였다.

[표 10] 970 Tag(원문사항) 규칙

970 Tag (원문 사항)	
제1지시기호 0 : 저작권 확보	제2지시기호 0 : 비판매용
1 : 저작권 미확보	1 : 판매용
식별자 ▼a 디지털 원문	

[표 9]에 나타난 3가지 유형 중 판매용 도서 중 5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한 구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변하므로 값을 고정하지 않고, 기존의 260 Tag의 ▼c의 출판년도를 활용하여 원문을 이용하려는 시기의 년도를 비교하여 처리함으로서 한번 입력한 값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관내 열람의 경우 아날로그 형태 보유수량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기존의 093 Tag의 ▼c를 활용하여 표시된 보유수량을 체크하도록 하여 도서의 추가확보 등에 따른 변동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적용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에서 보여지는 원문서비스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이 디지털 자료는 970Tag의 제1지시기호가 0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이므로 복제, 전송, 출력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자료이다.

[표 11] 원문 서비스 관련 Tag 적용 예시 1

Tag	제 1 지시 기호	제 2 지시 기호	각종 식별자
› 090			▼a 004.01 ▼b 63
› 093			▼a TH11788 ▼a TH11789 ▼c 2 ▼x TM
› 100	1		▼a 정동호
› 245	1 0		▼a GIS를 이용한 아시안게임 경찰시설 안내 ▼d 정동호.
› 260			▼a 부산:▼b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c 2002.
› 300			▼a v, 34장:▼b 삼도;▼c 27 cm.
› 502	0		▼a 학위논문(석사) ▼b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c 전산정보학과(산대), ▼d 2002
› 950	1		▼a 비매품
› 970	0 0		▼a 디지털 원문

[표 12]에서 보여지는 원문서비스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이 디지털 자료는 970Tag의 제1지시기호가 1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미확보된 자료이다. 제2지시기호를 살펴보면 1이기 때문에 판매용 도서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도서관에서 전송을 원할 경우 260 Tag의 ▼c에 표시된 2001에 5를 더한 값이 현재 연도 2004 보다 크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가능한 자료이다. 관내 열람의 경우 093 Tag의 ▼c의 값 3의 범위에서의 동시 이용이 허락되는 자료이다.

[표 12] 원문 서비스 관련 Tag 적용 예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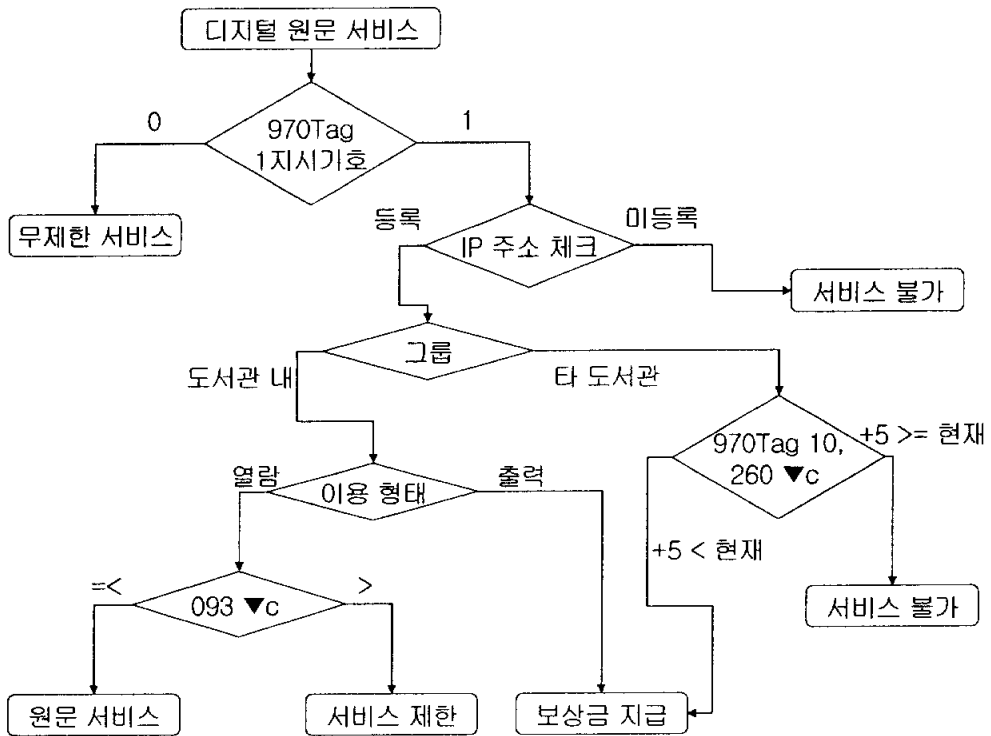
Tag	제 1 지시 기호	제 2 지시 기호	각종 식별자
› 090			▼a 813 ▼b 3203-2
› 093	1		▼a EM344635 ▼a EM344636 ▼c 2 ▼a EM344637 ▼c 3
› 100	1		▼a 위기철
› 245	0 0		▼a 아홉살 인생:▼c 위기철 소설/▼d 위기철 지음.
› 260			▼a 서울:▼b 청년사,▼c 2001.
› 300			▼a 264 p.:▼b 삽도:▼c 20 cm.
› 950	0		▼b ₩8000
› 970	1 1		▼a 디지털 원문

위에 살펴본 기존 MARC를 활용한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위한 표준 모델을 설계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지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에 접근하면 우선적으로 970 Tag의 제1지시기호를 통해 저작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저작권 확보자료인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 미확보 자료인 경우 접속자의 IP Address를 체크하여 관내 접속자와 타 도서관 접속자, 그 외 접속자를 구분한다. 이를 위해 관내 IP Address와 타 도서관 IP Address를 서버에 등록해 둔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접속자의 디지털 자료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용을 제한한다.

관내 접속자인 경우 출력 이용일 경우 보상금처리시스템을 통해 산정처리하고, 열람의 경우 093Tag의 ▼c에 표시된 보유수량의 범위에서 동시 이용이 되도록 제한한다.



<그림 2> 디지털 원문 서비스 모델

타 도서관 이용자인 경우 970Tag의 제2지시기호가 0으로 비판매용 도서이거나 970Tag의 제2지시기호가 1인 판매용 도서인 경우 260Tag의 ▼c의 출판년도가 올해보다 5 이상 작아 출판된 지 5년이 경과된 디지털 자료인 경우에 한하여 전송을 허용하고 보상금을 산정 처리한다.

4.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형태의 서비스보다도 이용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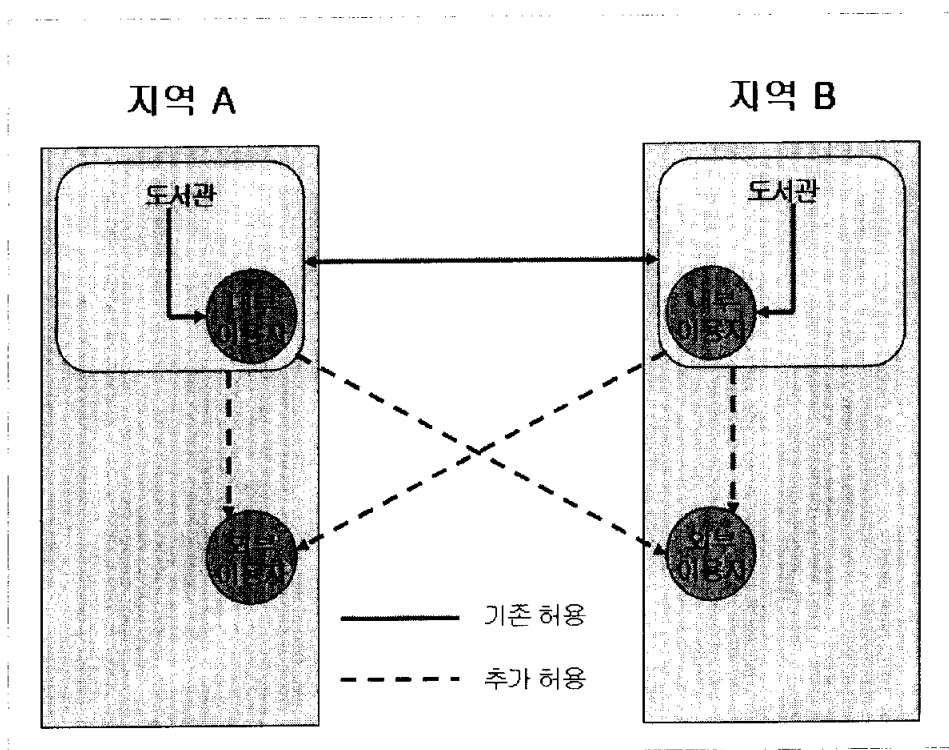
털로 구축된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없고, 도서관을 방문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료를 출력하려면 그에 따른 도서관보상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원문 디지털화를 하였으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 중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안코자한다.

첫째,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자료에 대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아날로그 환경의 도서관에서 자료 대출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자료를 대출 받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듯이 디지털 자료를 전송 받은 이용자는 일정기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에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원격지 전송이 안 된다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마치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그 공간 안에 있는 PC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송에 대한 허용은 도서관 간의 전송과 도서관 내부이용자에 대한 전송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원문 디지털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가로 막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도서관 외부 이용자에 대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여야만 디지털 도서관 구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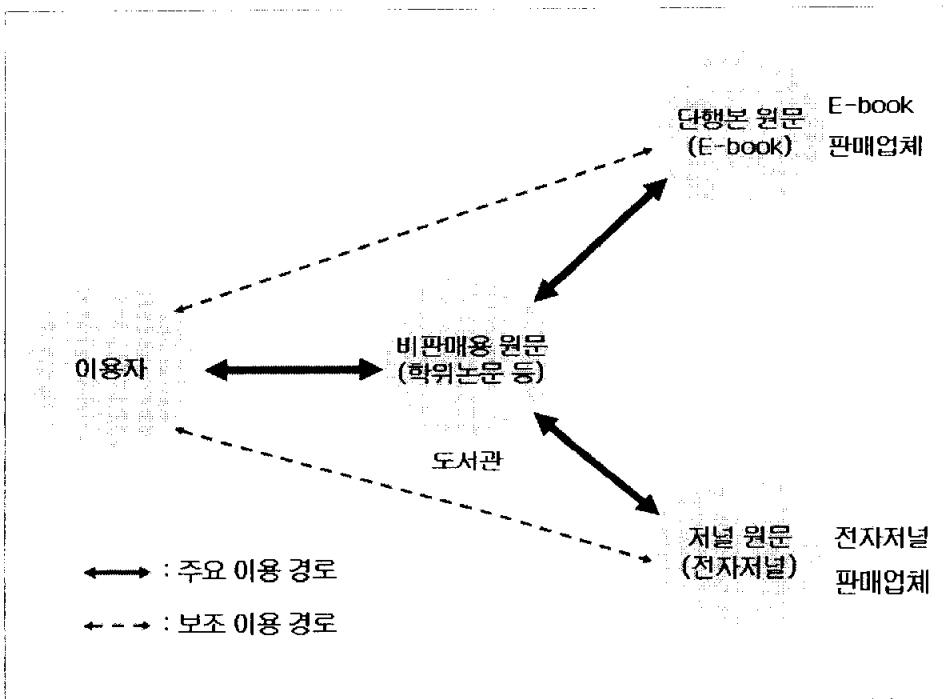
<그림 3> 원문 원격지 전송 허용 모델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실제보유수량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전체 출력의 제한, 자료의 변형 및 유통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비판매용 자료에 대한 원문 디지털화, 출력, 전송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판매용 자료에 대해서조차 도서관의 공정사용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원문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학위논문과 교내 발간자료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원활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상호대차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비판매용 도서 전체에 대한 도서관 내의 원문 디지털화, 전송, 출력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판매용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를 살펴보면, 단행본에 대한 e-book 형태의 판매 증가, 학술지 원문에 대한 콘텐츠 관련업체의 디지털화, 전자저널과 웹DB를 통한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며, 이용자에게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원문 구축 역할 분담을 통한 서비스 계통도

<그림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원문 디지털화에 대해 콘텐츠 판매업체와 도서관이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비판매용에 대한 디지털화는 도서관에서, 판매용에 대한 디지털화의 경우 단행본은 E-book 판매업체에서, 저널부분은 전자저널 판매업체에서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도서관을 통한 서비스를 주로하고, 이용자가 직접 관련 업체에서 원문을 서비스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한 원문 구축과 서비스는 출판 및 콘텐츠 관련 업체의 활성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디지털 도서관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고, 이용자 서비스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V. 분석 및 평가

1. 분석 및 평가

본 연구는 개정 저작권법 중에서 디지털 도서관 부분에 대한 저작권 제한과 디지털 자료 서비스를 위한 각 도서관에서 조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특히 디지털 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해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복제, 전송, 출력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에 따른 법 적용을 흐름도로 도식화하여 디지털 도서관 관련 실무자 및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능 여부 등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향후 법테두리에서의 원문 디지털화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가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과 소극적인 저작권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서비스를 위한 표준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반면, 본 연구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자료 선별과 서비스를 위해 현재 목록에서 사용 중인 MARC의 Tag를 활용하거나 신규 생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접근 단계부터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정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범위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 13] 저작권 처리 제안 모델 내용

내용	처리 방법	비고
저작권 여부 판단	970 Tag 제1지시기호	초기 접근단계(서지검색)에서 판단
미등록 접근자 선별 차단	등록 IP 체크	
관내 열람 대상 자료 판별	093 Tag ▼c	기존 Tag 활용
출력에 따른 보상금 처리	보상금 관련 로고 생성	
타 도서관 전송 기준	970 Tag 제2지시기호 260 Tag ▼c	기존 Tag 활용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상 허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였고,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문 디지털화의 역할분담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이 가지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 못지않게, 사회 문화향상 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의 보다 폭 넓은 공정사용을 허용해야만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향후 연구 과제

현재까지의 연구는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연구와 그에 따른 저작권 처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원문 디지털화와 서비스가 저작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판매용 도서에 대한 도서관에서의 공정사용 확대가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만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P2P 형태의 음악파일의 서비스가 음반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 저작자와 공공의 이해득실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반면, 도서관에서는 많은 이용자에게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었다.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원문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부 권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이 상충되므로 도서관 측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초기부터 인정되어 왔던 도서관의 공정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디지털 네트워크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두어, 도서관의 원문 디지털화의 장애요소가 됨으로서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도서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한 원문 디지털화를 표준 모델로 제시한 바와 같이 MARC를 기반으로 하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기술적 조치와 행정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저작물의 효율적인 유통과 사회의 문화발전이라는 고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수와 자료량 등에서 외국에 비해 극도로 열악한 우리나라 도서관 현실을 고려한다면, 많은 예

산을 들어 구축한 원문 디지털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폭 넓은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마련된 디지털 도서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화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이 필수적이며, 그 기본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정상조,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지적소유권법연구 제 4집, p95-109, 2000.
- [2] 홍재현,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 p139-164, 1997.
- [3] 장춘익, “디지털 환경은 ‘공정이용fair use’을 무효화하는가”, 철학, p255-280, 2001.
- [4] 최경수,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 2003 개정 저작권법”, 저작권 통권64, p43-59, 2003.
- [5]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2000.
- [6] 김형렬,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통권23호, p43-56, 2002.9.
- [7] 이호홍,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통권30호, p42-55, 2003.6.
- [8] 윤선영, “저작권법에 따른 디지털 정보의 축적·서비스”, 디지털도서관 통권22호, p110 -115, 2002.6.
- [9] 정찬모, “전자도서관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10] 김윤명, 정준민,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p181-201, 2002.

- [11]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서관보상금 제도설명회, 2003.
- [12] 윤선영,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67, p19-33, 2001.
- [13] 유수현,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 p323-345, 2004.
- [14] 심효정, “개정저작권법과 원문 DB사업”, 시민과 도서관, p32-53, 2000.
- [15] 이종문,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경 평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p211-236, 2002.